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9. 9 평창군수(내무과장)

나. 회부일자 : 1998. 9. 15

다. 상정일자 : 1998. 9. 16 제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이유

가. 21세기 본격 자치화·지방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하고

나. 조직과 인력의 과감한 축소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당면 경제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 직위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구로 개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존의 2실 14과(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역개발과, 관광문화과, 지적과, 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상공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실 7과(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건설과, 도시경제과)로 축소조정

- 지역개발과, 상공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
- 민원봉사실과 지적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조정
- 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복지과로 조정
- 농정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산림과를 임업경영과로, 도시과를 도시경제과로 명칭 변경
- 계제 폐지에 따라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는 규정 폐지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98. 8. 31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기존의 2실 14과에서 2실 7과로 총 7개과가 통폐합되어 기구가 축소 조정되는 것임.
- 안별로 검토한 결과
 -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과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업무의 효율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내용의 통합등 기구와의 균형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가 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계제 폐지에 따른 실과 밑의 하부조직 구조로 계를 두는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조직운영에 있어 시행초기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조직운영이 방만해짐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의 보다는 행정편의가 앞섰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었는 바 금번에 개정되는 본 행정기구의 축소 통합으로 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조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기타 자구 및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9. 9 평창군수(내무과장)
- 나. 회부일자 : 1998. 9. 15
- 다. 상정일자 : 1998. 9. 16 제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축소하게 되어 정원을 개편안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개편된 조직에 따라 정원 재조정
- 나.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을 구분하여 규정
- 다. 본청 정원“235”, 의회사무과 정원“11명”, 직속기관 정원“135명”, 사업소 정원 “8명”,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정원“240명”을 집행기관의 정원“542명” 의회사무과의 정원“10명”으로 조정

4. 검토의견

- 가.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축소하게 되어 정원을 개편안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으로 크게 구분하여 집행기관 정원은 542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1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나. 집행기관 정원은 당초 618명에서 76명으로 의회 기관은 당초 11명에서 1명이 줄어든 총 77명의 정원이 축소되어 정원의 12.2%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평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9. 9 평창군수(내무과장)

나. 회부일자 : 1998. 9. 15

다. 상정일자 : 1998. 9. 16 제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개정 내용중 “지방의 회의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 무국장,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98년도 조직개편 으로 제제가 폐지됨에 따라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의회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과장, 전문위원,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조정

나.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는 규정을 “전문위원 은 의회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외의 일반적인 사무 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로 조정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의 개정내용중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에 대한 지휘관계를 명문화 시켜 지방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평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9. 9 평창군수(내무과장)
- 나. 회부일자 : 1998. 9. 15
- 다. 상정일자 : 1998. 9. 16 제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가.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1차 산업분야인 농정, 축산, 농촌지도소 업무를 농업 기술센터로 일원화 하고
- 나.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1차 산업의 정책사항과 유통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
- 나. 본청의 농정과와 축산과를 흡수 이관하여 농업경영과와 축산경영과로 조정
- 다.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통합하여 기술개발과로 조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임.
- 조직개편에 따라 1차 산업분야인 농정, 축산, 농촌지도소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하고
-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1차 산업의 정책사항과 유통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청의 농정과와 축산과를 흡수 이관하여 농업경영과와 축산경영과로 조정하는 것임.

-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를 소장 밑에 두어 농축산 분야를 일원화 시켜 지역 농·축산 개발업무 및 유통에 있어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음.
-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평창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9. 9 평창군수(내무과장)
나. 회부일자 : 1998. 9. 15
다. 상정일자 : 1998. 9. 16 제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관내 4개 읍·면출장소(계촌, 면온, 수항, 유천)중 면온, 수항, 유천출장소를 폐지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가. 평창군읍·면출장소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표중 “봉평면 면온출장소, 진부면 수항출장소, 도암면 유천출장소” 란을 삭제(안제 2조, 제3조)

4. 검토의견

- 조직개편에 따라 관내 4개읍·면출장소중 계촌출장소를 제외한 면온, 수항, 유천출장소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구 및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9. 9 평창군수(내무과장)
- 나. 회부일자 : 1998. 9. 15
- 다. 상정일자 : 1998. 9. 16 제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98년도 조직개편으로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계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조직개편 내용과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읍면의 계장이하 소내 전보권을 “읍·면직원의 소내전보권”으로 변경

4. 검토의견

- 실제내용이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읍·면의 계장이하 소내 전보권”이란 내용은 “읍·면직원의 소내 전보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